

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. 11. 13 선고 2024가단14281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
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

담당변호사 이현정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0. 16.

판 결 선 고 2024. 11. 1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 한 선내 (가)부분
132㎡ 지상 판넬조립식 가건물을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 라.

나. 2024. 5. 21.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,900,000원의 비율 로 계산한
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조현락

별지